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FAQ

1. 지원요건(중복지원) 관련

Q. '2024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과 제2024-03호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우수 신약개발 지원'에 같은 물질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물질, 동일 연구내용으로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중복지원하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국가신약개발사업단 '2024년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과 제 2024-03호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우수 신약개발 지원'을 모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서로 다른 물질 및 연구 내용으로 동시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 RFP 중 한 과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다른 연구 내용이라면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물질, 동일 연구내용으로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Q. 제1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와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과제 두가지를 한 기업에서 지원가능한가요? 동일물질, 동일연구 내용은 아닙니다

A. 지원 가능합니다.

Q.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동일 연구 내용(동일 개발단계 및 동일물질)은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기 지원받은 후속단계 개발 내용은 가능합니다.

Q. 타 정부 지원 과제로 국내 임상 진출을 위해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과제로 동일 질환에 다른물질 경우 지원 가능한지요?

A. 다른 물질을 개발하는 경우 별개의 과제로서 지원 가능합니다.

Q. 기 선정되어 진행되는 과제와 동일물질이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이라면 지원 가능한가요?

A. 적응증이 다른 경우 별도의 과제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적응증에 집중하여 개발하여 승인 받은 후 적응증 확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 타부처 과제로 국내 임상 진입을 위한 IND 제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같은 주제의 과제로 해외진출을 위한 IND 준비 과제로 제안하려하는데 이것이 중복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혹 이전에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예, 안전성, 독성시험 자료 등)을 번역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 동일 개발 단계에 대한 연구계획으로 기 지원 받은 내용과 동일한 연구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존 연구 결과를 번역하는 것은 연구개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글로벌공동개발 관련

※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의 조건은, 붙임1. 통합공고문 및 안내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Q. 후보단계는 해외 파트너 기관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후보단계이고 해외파트너가 없는상황인데 계획서 작성시에는 해외 협력 부분은 계획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A. 계획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쓰실 때 신뢰성 있는 부분으로만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파트너가 없는데 파트너를 사용해서 공동개발하겠다는 전반적인 계획은 문제가 없으나, 상대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계약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기재하는 등 실제와 다른 사항은 안됩니다.

Q.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의 기업 조건에 "미국, EU, 영국, 홍콩, 일본에 등기되어 있어야 함"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기업의 자회사, 운영지점 등이 위치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A. 파트너기업의 자회사, 지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사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Q. 글로벌공동개발의 경우, 개발파트너가 꼭 개발권리를 공유해야하는지요? (예시 : 대학병원을 글로벌공동개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데, 역할은 미국임상1상 시, 수행병원임. 권리는 share 하지 않음)

A. 단순 임상 수행기관(병원)인 경우는 용역기관이므로 공동개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고문에 제시된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Q.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한다’ 고 되어있는데, "우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정시 가점이 있는 것인가요?

A. 평가기준 각 고려 사항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점수가 반영됩니다. 가점은 아닙니다.

Q. 선도~비임상 단계 지원에서 글로벌 파트너가 있을 때 우선한다고 하셨는데, 글로벌 파트너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동시에 지원한 경우 파트너가 있는 기업이 무조건 우선 선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산점을 받는 개념인가요?

A. 평가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해당 과제의 우수성입니다. 신약개발과제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물질인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동등한 수준일 때 공동개발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식적으로 가산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Q. 임상단계 지원 시 공동연구 협의 중이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입증자료 제출을 해야하나요?

A. 파트너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면 MOU, LOI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접수가능합니다. 다만, 협약하기 전 계약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Q. 선도~비임상 과제의 경우 ‘기업이’ 연구수행 과정 중에 ‘공동개발 파트너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 KDDF에서 기업과의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A. 사업단에서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파트너링 연결을 적극 지원합니다. 선도~비임상 과제는 공동개발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우대합니다.

Q. 선도~비임상과제의 경우,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가 없는 경우, 사업단에서 파트너 연결을 지원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독기업이 신청한 후,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신청기업이 원하면) 파트너를 연결시켜 준다는 건지?

A. 선정된 과제 중 파트너가 없다면, 사업단에서 파트너 연결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사업개발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Q. 공고에 KDDF에서 공동연구 파트너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제 선정 전입니까? 후입니까?

A. 파트너링 지원은 선정된 과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RFP상 명시되어 있듯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단의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 연결을 위한 사업개발 활동 요구에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링 뿐 아니라 R&D 지원사업과 CMC 지원사업 등 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Q. 글로벌 파트너가 없는 경우, 사업단에서 지원 및 요구하는 '사업개발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과제홍보, 파트너링 미팅, CDA맺은 후 추가요청자료 협조, 현장실사 등의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 연결을 위한 활동입니다.

Q. 공동연구가 아닌 글로벌사에서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도 우대가 되는지요

A. 본 사업의 지원목적은 글로벌 차세대 신약 창출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임상개발 경험 축적에 있으므로 역할 분담 없이 글로벌사에서 기술도입을 한 경우는 우대사항이 아닙니다.

Q. 공동개발파트너사가 제시된 글로벌 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 회사의 모회사가 충족하는 경우 공동개발 파트너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해외 글로벌사에서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해외 글로벌사는 기술 제공 및 약물 제조에 필요한 물질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현재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공동개발 파트너로 보여집니다만, 공동개발 파트너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역할 분담 등에 대해 평가 시 계약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Q. 미국의 병원에서 주도하는 연구자 임상의 경우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요?

A. 연구자 임상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글로벌 제약회사와 공동연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CDA진행하였고, 아직 MOU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비임상 이전 단계는 가능합니다. 임상단계는 CDA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역할 분담 및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서에 준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선정 되어도 계약 완료되어야 협약 가능합니다.

Q. 글로벌 공동연구 파트너는 반드시 현금을 연구비로 투자하여야 하나요?

A. 글로벌 공동연구 파트너사의 기여는 반드시 현금을 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글로벌 공동연구 파트너에 CRO도 포함가능한가요? Labcorp과 같은 업체와 MOU를 맺으면 공동연구파트너로 지원가능한가요?

A. CRO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체(Labcorp)는 CRO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비를 받고 대가를 치르는 용역의 경우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해 파트너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에 해당하고 MOU를 제시하셨더라도 협약 전까지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Q. RFP 내용 중 "주관연구 개발기관은 주된 상업화 권리 또는 최소한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와 동등한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부문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스 아웃(기술이전) 계약 시, 파트너사에게 독점적으로 상업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계약 사업구조는 진행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A. 본 RFP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업화 권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실시권이 됩니다. 라이선스 아웃으로 글로벌 판권 전체를 해당 기관(글로벌 파트너사)에 이전하였을 경우 국내 기관은 현재 개발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Q. RFP(안)을 보면 “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가 있는 경우, 연구계획서 내에 공동개발 역할 분담 계획 및 연구성과 분배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제시” 하라고 되어있는데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KDDF에 알려야 하는지요?

A.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내에 공동개발 역할 분담 계획 및 성과 분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파트너의 조건 등 우대 조건을 받으려면 증빙도 필요합니다. 변경 시 선정평가 전 반영해야 하기에 선정과정 중엔 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선정 후 과제 진행 중이라도 선정평가 결과 또는 계속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글로벌회사(A)의 연구 내용도 본 과제에 포함시켜서 플랜을 잡아야 하는지 주관기업의 할당 부분을 본 과제에 작성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A. 글로벌 회사가 RFP의 공동개발 파트너라면 글로벌 회사에서 맡은 부분도 해당과제의 개발계획을 설명하기위해서 필요할 것이므로 연구계획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사업의 연구비는 주관기관의 부담분에 한정하므로 글로벌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 내용에 연구비가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글로벌회사가 주관기관이 계약한 CRO 등의 용역기관이라면 해당 내용은 연구계획에 당연히 포함되고 연구비 사용 가능합니다.

Q. 글로벌 공동 연구업체의 비용(A), 주관기업 단독비용 (B), 공동연구업체와의 공동부담 비용(A+B의 교집합)을 모두 본 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A. 글로벌 공동연구업체가 RFP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라면 글로벌 공동 연구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됩니다.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안됩니다. 주관기관이나 국내기관이 사용하는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연구업체가 CRO등 주관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한 기관이라면 주관기관의 연구비에 포함됩니다. 즉 모든 비용 사용 가능합니다.

Q. 글로벌회사는 현재 phase 1/2 임상을 진행 중인데 글로벌회사로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A. 글로벌 임상2/3상 수행역량을 충분히 제시해 주신다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할 때 전문가 의견에 따라 판단합니다.

3. RFP 관련

Q. 병용 투여 개발에 대한 제안서 접수가 가능하나요?

A. 승인된 의약품의 병용투여 연구 또는 병용 임상은 5내역의 공동개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제외사항에 감염병(코로나19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감염병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제외조건의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감염병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Q. Treg 세포 추출하여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인가요?

A. ‘세포’ 치료제는 *in vivo*만 가능하고, *ex vivo*인 경우 항암면역세포 치료제(유전자 탑재 여부 관계없이 단순 배양 T 세포 등을 포함)는 지원 가능합니다.

Q. 엑소좀은 *in vivo* 세포치료제라고 생각하므로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A. 엑소좀은 지원대상입니다.

Q. 지원제외 부분에서 항생제 개발은 감염병으로 간주되나요?

A. 항생제 개발은 감염병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항암과제와 비항암과제 비율을 어떻게 되나요?

A. 과제 선정에서 질환 분야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방사성의약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A. 포함됩니다.

Q. 면역 항암 항체(선도단계)도 지원 가능한지요?

A. New target의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Q. 파트너 설정 기준에 맞는 회사의 needs가 존재하는 선도단계의 약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적응증의 희소성 등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A. 적응증이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Q. 일반적인 항체가 아닌 다른 형태의 fusion antibody면 new modality 분야로 해당이 될까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new modality에 해당하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 제안서에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Q. 지원과제의 Novel target/new modality는 novel target OR new modality인가요 novel target AND new modality 인가요?

A. OR입니다. 둘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Q. 단일항체 치료제는 해당되나요?(ADC에 해당되는지)

A. 단일항체는 대부분의 적응증에서 new modality는 아닙니다. new target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new target이 아니면서 monoclonal antibody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지원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Q. 후보물질 단계 지원시, 적절한 TPP 항목을 지정해 줄 있나요? 예 비독성 등은 과제 제출 후에 실시할 계획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A. 과제신청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TPP 와 각 개발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내용에 대한 예시가 있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후보이하 단계에서는 TPP에 따른 Target candidate profile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각 연구항목별 평가항목 예시 자료와 해당 질환 분야의 다른 자료도 참조하여 개발하고자하는 물질의 목표치(target candidate profile)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 지원범위에서 세포치료제(항암백신)와 항암면역치료제의 병용 연구의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A. 기존 승인받은 것과 개발하고자 하는 물질의 단순 병용 임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내용 자체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합니다.

4. 지원자격 관련

Q. 주관기관에서 지원 과제 수 제한이 있나요?

A. 동일 물질, 동일 연구내용으로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파이프라인이 다르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평가에서 신청기관의 수행 역량도 고려의 대상이므로 복수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각기 교수 2명이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로 바꿔서 2개 과제 지원 가능한가요?

A. 2개가 다른 과제이면 접수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가 시 2개 과제 동시 수행 가능한 역량 및 3책5공 기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Q. 기업이 주관으로 지원할 때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것은 가능한지요?

A. 국내기업과 지분을 공유하는 대학이 있는 형태로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 공동기관은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 미국, 유럽, 영국의 비영리 기관(NIH, CRUK 등), 단, 대학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대학 내 병원은 비영리기관에 속하는지요?

A. 단순 임상시험 수행은 용역으로서 글로벌 공동개발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약개발 수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출 시 해당 기관의 글로벌 임상개발 수행능력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Q. (선도) 해외기관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경우, 우대 받을수 있는지요?

A. 해외기관이 공고에 명시된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의 조건” 충족 시만 우대 가능합니다.

Q. 초기 개발단계의 경우 구체적인 공동개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및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글로벌 신약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Q. 주된 상업화 권리가 무엇인가요?

A. 신약개발에 있어서 상업화 권리는 실시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공동개발 파트너와 동등 이상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만의 권리가 아닌 글로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연구책임자가 해외연수 중이고 내년 7월에 복귀예정인데 과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과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발표평가지 연구책임자가 진행하셔야 하고, 연구개시일이 2024년 7월 1일 예정이므로 연구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Q. 한 파이프라인에 대해 개발 단계가 달라질 경우 다음 단계도 연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연속 과제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 지원 받은 후속 단계 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속 과제에 대한 우대 조건은 없습니다. 신규 과제로 경쟁을 통해 선정합니다.

Q. RFP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 명시, 연구활동에 대한 기여 부분 (현금, 현물 등) 객관적인 기술협력, 업무 분담 내용이 포함, 양측 연구 책임자가 이해했다는 서명 포함한 공동 개발 증빙 자료' 이 부분은 공동 연구 계약서 내용이므로 협약 전에만 준비하면 되는건지요?

A. 협약 전 계약서 내용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평가시 조건에 맞는 파트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각 기관의 부담하는 증빙은 제시해야 합니다. 비임상 이전 단계라면 파트너 없이 평가가 가능하나 임상 단계의 경우 공동개발 내용이 없을 경우 결격 사유가 됩니다. 현재까지 논의가 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 바랍니다.

Q. 통합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된 '신약개발 SEED 창출 플랫폼 사업 지원' 은 공동개발사(MOU맺은)가 있어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SEED창출 플랫폼 사업은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과제 공모에 접수한 기관(선정여부 무관)과 신약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기관을 파트너링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개발사의 존재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Q. 비임상과제 지원 관련하여 18개월 이내로 계획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지원 기간을 18개월보다 더 단축하여 지원하는 경우, 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실현이 가능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계획으로 필요한 연구비 지원받으시고 신약개발 속도도 높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RFP상은 24개월 이내로 되어있으나 18개월 이내의 신속한 연구계획 수립을 권고합니다.

**Q. 24년 1차 투심에서 탈락되었는데 2차에 같은 주제지만 평가내용
들을 반영하여 신규대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과제의 경우에도 같은 과제인데 신규대조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
까요?**

A. 기존 사업으로 지원했어도 해당되는 경우는 글로벌 지원과제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탈락사유에 대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할 때 평가위원분들에게 탈락사유를 드리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엔 과락을 주심사하고 안내를 드리므로 평가의견 보셔서 짧은 시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시다면 보완하시고 신규대조표 내셔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5. 협약 관련

Q.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을 공동(협력)기관의 참여인력으로 잡을 수 있나요?

A. 국내 기관의 경우 가능합니다. 해외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외 기관으로서 현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Q. 협약시작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6.30일 종료 예정인 과제 종료 후 7월에 연구개시가 가능한지요?

A. 선행과제가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경우, 신규 과제 선정 평가(투자심의) 확정 전에 선행과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평가 일정 조율은 진행중인 과제의 담당 PM(전문위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연구기간을 24개월이 아닌 16개월로 계획할 경우, 연구비 예산을 공고문에 제시된 예산 총 금액으로 계획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선도 16개월 일 경우 예산을 10억으로 계획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실제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산계획에 대해 근거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 평가 및 협약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과제 중에 퇴직하고 명예교수가 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확약서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과제접수 시 고용유지확약서(주관기관 양식)제출이 필요합니다.

Q. A기관과 기술지원협약을 맺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A기관을 위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공동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A기관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용역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2) A기관이 권리의 일부를 가지고 해외 기관이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하여 참여하면 됩니다.

(3) A기관이 권리의 일부를 가지고 국내기관인 경우,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Q. 공동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비는 어느정도 인가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요

A. 공동 연구기관이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를 의미하신다면 이 사업은 국내 기관에만 지급됩니다. 추진 체계에 해외 파트너가 있는 전체 중에 국내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만 정부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 기관에는 연구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기관간의 공동 연구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에 지급되며 주관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이 필요한 연구비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첨부13]국제공동연구시 수행여부/권리관계 증빙자료, [첨부17] 주관연구기관의 개발권리 제한 관련 증빙 이 두개는 계약서 내용과 관련 있는데요. 5월말까지 준비가 안된다면 LOI 에 대략적인 내용으로 대신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내는 것은 가능한지요?

A. 첨부13의 경우 접수 시 LOI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 특히 투자심의위원회 전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가장 좋습니다. 첨부17의 경우 제한이 있으면 제한된 부분도 고려해서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내외 상관없이 계약 관계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LOI 등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비임상과제 지원 관련하여 연간 25억이라 하셨는데, 18개월 이내로 계획 작성시 총 예상 비용을 연간 25억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8개월이면 25억 (1년) + 12.5억 (6개월) 인지 18개월 동안 50억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필요한 연구비로 초기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하기 전에 연구비 산정근거 다 받으면서 협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것이 평가시에 설득력 있습니다.

6. 기타

Q. 추후 추가 공고 및 선정 계획이 있나요?

A. 글로벌 진출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목표한 신규과제를 모두 선정한다면 추가 공모하지 않습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2차 1-3내역은 5월17일 공고하여 7월1일 접수마감 예정입니다.

Q. 2025년에도 '신규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공고 계획이 있나요?

A. 부처와 예산당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과제들에 대한 예산을 신청 중이고, 정부의 예산심의회가 1년 내내 진행되어 과기부, 기재부, 국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확정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존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먼저 예산 지원을 하고, 차년도에 신규로 뽑을 과제들을 그다음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계획상 2025년도에도 신규과제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Q. 연구비 삭감 가능성이 있나요?

A. 2025년도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